

“금융은 튼튼하게, 소비자는 행복하게”



	<b>보도자료</b>		
	<b>보도</b>	<b>2016. 5. 2.(월) 조간</b>	배포 2016. 4. 29.(금)
담당부서	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	설인배 국장(3145-5700), 최옥순 팀장(3145-8520)	

**제 목 :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범위 확대 및 상속절차 안내 강화**

(제2차 「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」 과제 16 세부이행과제)

- ▶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(74만명) 가입여부 확인
- ▶ 서비스 신청단계에서 상속절차 등 안내

**I 추진배경**

- 금융감독원은 「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」의 일환으로,
  - 상속인에게 사망자의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정보제공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「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」 대상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
    - \* '15.6.30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구축하여 전국 지자체로 접수처를 확대 시행한 이후 상속인 금융거래조회가 크게 증가하는 등 대국민 서비스로 자리 매김 【'15년 113,839건으로 전년(82,228건) 대비 38.4% 증가】
  - 금년에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상속인이 상속절차를 이해하지 못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정보제공을 강화하기로 한 바 있음('16.3.29)
- 이에 '16.5.2.(월)부터 동 서비스 대상기관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를 추가하고, 상속절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도록 추진하였음

## II

##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개편내용

### 1 (대상범위 확대)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는 사망자의 노란 우산공제\* 가입여부(납입한 부금액) 확인 가능

\* 소기업·소상공인의 폐업, 사망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공적제도로 사회안전망 기능을 위해 2007년 도입

- 납입부금액\*은 상속인 금융조회 신청시점 기준 원금합계액을 제공

\* '16.3월 기준 가입자 74만명, 납입부금액 약 4.8조원

### 2 (상속절차 안내강화) 상속인이 조회서비스 이용 후에 상속 법률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불이익 사례\* 발생

#### <사 례>

은행에 채무가 있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1순위 상속인(사망자의 처 및 자녀)은 상속포기를 하였으나, 차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미성년 직계비속(사망자의 손자녀)은 상속관련 법률규정을 알지 못하여 상속포기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피상속인의 은행채무를 상속(1순위 및 차순위 상속인 모두 상속포기가 필요)

- 상속인이 피상속인 재산조회 신청시 상속절차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접수증에 안내문구를 추가

#### <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접수증에 추가 기재할 안내문구>

##### ※ 상속절차 안내

상속인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확인한 금융재산 그밖에 재산조회 결과에 따라 단순승인, 한정승인, 상속포기를 결정할 수 있고, **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.** 각 가정 법원에서 상속 처리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며, 구체적인 상속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**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, 서울시 무료법률상담실(☎02-120)** 등을 통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\* 단순승인 : 피상속인의 채무(빚)와 재산을 모두 승계하는 것

한정승인 : 상속으로 인해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채무(빚)를 승계하는 것

상속포기 : 피상속인의 채무(빚)와 재산을 모두 승계하지 않는 것

**단, 채무승계를 받지 않기 위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차순위 상속인에게 순차적으로 상속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음**

- 금융회사 등 접수처에 상속절차를 안내하는 팜플렛을 제작하여 배포
  -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신청시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등 상속절차에 대해 안내할 수 있도록 할 예정

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대상 확대 및 상속절차 정보제공 강화로 상속인의 상속여부 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

### III 향후 추진계획

-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동 서비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조회대상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
  - '16.7월중 금융감독원 감독대상에 편입예정인 대부업체 등을 조회대상에 포함할 예정

- ◆ 금융에 관한 피해나 불만사항이 있는 경우 전국 어디에서나 「금감원콜센터 1332」로 전화하시면 다양한 금융상담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으며(평일 9시~20시, 토요일 9시~13시), 금융생활에 필요한 금융지식 및 금융통계 등 각종 정보는 금융소비자보호처 홈페이지(<http://consumer.fss.or.kr>)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- ◆ 체계적인 부채관리, 생애주기별 재무관리, 은퇴·노후준비 관련 상담을 원하는 경우 금감원콜센터 1332(▶7번 금융자문서비스)로 전화하시면 서민을 위한 무료 부채·재무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<http://www.fss.or.kr>)

**□ 제도 개요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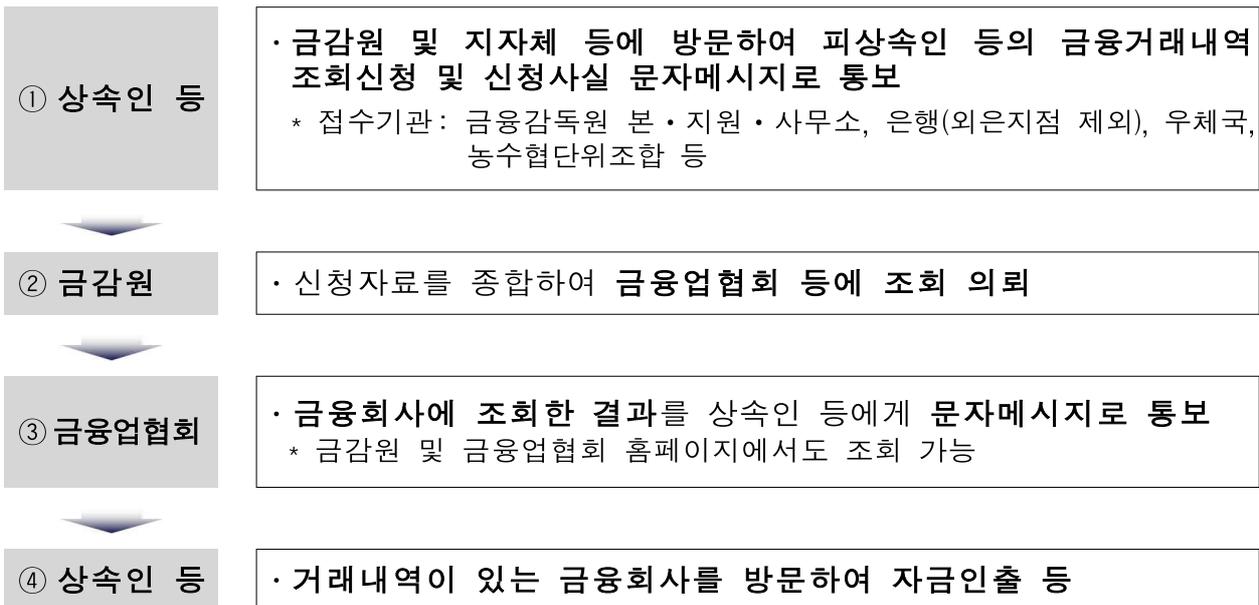
- 금융감독원은 상속인이 피상속인 등\*의 금융거래 조회를 하기 위하여 다수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'99년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제공

\* 사망자, 실종자, 금치산자,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

※ 피한정후견인 조회는 한정후견개시심판문 양식에 “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한 금융거래 등 정보확인” 항목이 있는 경우에만 상속인조회 신청 가능

**□ 대상회사 및 조회범위**

- 대상회사 : 은행, 금융투자, 생보, 손보, 카드, 저축은행, 신협, 새마을금고, 산림조합, 예탁결제원, 우체국, 예보, 대부업 등 13개 금융권역
- 조회범위 : 피상속인 등 명의의 예금, 대출, 보증, 증권계좌, 보험계약, 신용카드, 공제계약 및 가계당좌거래 유무

**<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절차>**

※ ‘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’ 도입(15.6.30.)으로 상속인이 자치단체를 방문하여 사망신고와 동시에 한 장의 신청서 작성으로 각 기관 개별 방문 없이 6개 상속재산\* 조회 신청이 가능(사망자, 실종자만 해당)

\* 금융, 국세, 국민연금, 토지, 자동차, 지방세